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(요약)

1 계약 과정[입찰-평가-이행] 안전관리 체계 강화

① **(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 신설)** **안전사고 발생 가능성**이 높은 사업은 **안전역량**(안전분야 기술·인증, 전문인력)을 **갖춘 기업**에 한해 **계약 수주** 허용

② **(낙찰자 선정단계 안전평가 강화)** ❶**중대재해 위반** 항목 **감점** 신설, ❷**100억~300억 공사**(간이형 종심제)에도 **안전관리 성과**가 반영된 **시공평가*** 반영, ❸**100억 이상 공사**(종심제) 및 **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**(PQ)는 **안전평가**를 가점제에서 **배점제**로 **전환**

* 시공평가: 현재는 300억 이상 공사(종합심사낙찰제·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(PQ))에서만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성과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 평가에 반영 中

③ **(안전 관련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)** **간접노무비 상향***, **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명시**** 등을 통해 **계약 이행과정**에서 **기업**의 **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착** 유도

*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간접노무비 계상시 조달청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구속력을 강화하고, 조달청 기준도 상향

**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비 누락 방지를 위해 입찰공고문상에 명시 의무화

④ **(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조항 신설)** **계약상대자가 안전문제**로 인해 **공사의 일시정지를 요구**하는 경우, **발주기관 승인**을 거쳐 **공사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**

2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

⑤ **(장기계속공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)** **공백기, 차수분할** 등 시공사의 **귀책사유 없는 장기계속공사 기간 지연**시 **공기연장 비용**을 **지급**하여 **현장 안전관리**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

* 공기연장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노무비, 안전관리비 등 부족 가능성 방지

⑥ **(낙찰하한율 상향)** 중소건설사의 **적정공사비 확보**와 **현장 안전관리** 등을 위하여 **적격심사**(국가공사 100억원 미만) **낙찰하한율 상향 (+2%p)**

※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

⑦ **(기술제안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분 반영)** **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** 체결시에도 **실시설계 기간**(약 1년)**의 물가변동이 반영**될 수 있도록 개선

* 턴키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실시설계 기간 물가변동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초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(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, '25.4월)

⑧ **(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완화)** **물품·용역 및 지방계약**과 **형평성**을 **고려, 공사계약** 계약보증금률(現15%)을 **10%수준으로 하향 조정**

3 중대재해 발생 강력 제재

⑨ **(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)** **중대재해 관련 기업**의 **공공입찰**을 **엄격하게 제한***하고, **제한기한 확대, 가중처벌 강화** 등도 함께 추진

* (예) (현행) 동시 2명 이상 사망시 → (개선)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

⑩ **(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의 명확한 승계 규정 신설)** **입찰참가자격제한**에 대해 **법인분할**이나 **명의 변경**을 통한 **제재 회피**를 차단하기 위해 **제재효력**이 **승계되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**

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방안(요약)

1 추진배경

□ **공공조달**은 **약 225조원 규모**로 **GDP의 9% 수준**까지 증가하여 **경제·사회적 가치 실현**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

* 규모(조원) : ('18) 141 → ('24) 225 / 참여기업(만개) : ('18) 40 → ('24) 60

□ **AI, 바이오헬스** 등 **미래전략산업 기반**의 **초기 혁신기업**이 성장할 수 있도록 **혁신적 성장체계 구축 필요**

2 추진과제

1 **(시장진입)** 공공조달길잡이 **컨설팅 서비스**를 **확대·고도화**, 공공조달 첫관문 **물품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효율화**

*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 및 지방조달청(11개)에 컨설팅 전담관 지정 운영

○ **지역 소재 공공기관 협업**을 통해 **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**하고, **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 구축**

○ AI 등 융복합 제품의 공공조달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자 **물품정보 등록체계를 정비**하고 **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**를 **효율화**

2 **(성장견인)** **벤처나라 지원대상을 확대**하고, 혁신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**혁신제품 제도 확대 운영**

○ **벤처나라 지원대상**을 **벤처·창업기업** → 벤처·창업기업, **청년기업, 기술혁신형 기업*, 경영혁신형 기업****으로 확대 검토('26.上)

*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(중기부 지정)

**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거나,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

○ **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**를 **'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**

- 공공부문의 **시범구매도 확대**

○ **'30년**까지 혁신제품 누적**5,000개 발굴·지정, 혁신제품 지정기관 지속 확대**('25년 연내 국방부, 우주청 포함)

○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**혁신제품 지정절차를 단축·효율화***하고 **혁신제품 지정**을 **연 3회 → 4회로 확대**('26.上)

* 단축 : (前) 공공성 심사 후 혁신성 심사 → (改) 공공성·혁신성 심사 동시 진행
효율화 : 심사과정에 병목현상이 존재하는 '조달적합성' 평가에는 추가인력 배치

○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**'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*' 도입**(9월)

* 혁신제품 지정서, 조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 감면 등(신보/기보)

3 **(시장안착)** 우수제품제도 **활성화**를 통해 **우수조달기업 육성**

○ 우수제품 지정심사시 전문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 등과 분리하여 **'AI 분야'를 신설하여 심사**('26.上)

* (前) 건설환경, 전기전자, 지능정보 등 8개 분야 심사 →
(改) 8개 분야와는 별도로 AI기술 분야를 신설하여 우수제품 심사 진행

○ 고가의 장비·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**임대(구독) 방식 활성화**(9월)

4 **(해외진출 확대)** 우수조달기업 **수출역량 강화**를 통해 **해외진출 촉진**

○ 해외기관에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**해외실증 사업 확대**

○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(G-PASS)를 개선*해 **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**(7월完)

* G-PASS 재지정시 수출노력도 반영, 수출성과가 있는 경우 재지정 심사면제 등

○ **수출 유관기관**(코트라·중진공 등) **협업**을 통해 조달기업의 **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**